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95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전진숙·이수진·이연희
박홍배·임미애·손솔
최혁진·전종덕·허종식
김정호·이인영·오세희
김선민·이정문·정춘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착취의 피해자이자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처벌보다 구조·회복·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청소년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청소년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u>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u>」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② · ③ (생략)</p>	<p>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u>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u>」 제20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청소년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 -----.</p> <p style="text-align: center;">② · ③ (현행과 같음)</p>